국민참여재판의 배제결정관련 보고

1. 관련규정

◈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◈
제9조(배제결정)
①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.
1. 배심원 · 예비배심원 · 배심원후보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· 신체 · 재산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어서 출석의 어려움이 있거나 이 법에 따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2.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(이하 "성폭력범죄 피해자"라 한다)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
4.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②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 ·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

2. 해설

가. 의의

- 국민참여재판은 전관예우와 같은 국민들의 사법불신을 불식시키고, 일반 국민의 시각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는 비난을 극복함으로써 사법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재판제도임

나.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극복 노력

- **배심재판이 감성재판 또는 여론재판으로 흐를 수 있다는 비난**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**수백 년의 배심재판 역사를 가진 미국에서도 끊임없이 제기**되고 있는 배심재판의 **본질적인 문제**라고 할 수 있음

-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**참여재판이 도입되기까지 상당한 진통**이 있었고, 참여재판을 도입하면서도 전통적인 미국식 배심재판과 달리 ①

배심원 평결의 권고적 효력, ② 배제결정제도, ③ 법관의 평의절차에서 의견진술 제도, ④ 일반 재판과 동일한 항소제도(미국의 경우 무죄평결에 대하여는 항소 불가) 등 다양한 보완장치를 두었음

- 배심원의 평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미국과 달리, 참여재판은 위와 같은 **보완장치를 통하여 일반 국민의 상식과 직업법관의 전문성을 조화**시키는 것을 본질적인 특징으로 하고 있음

다. 배제결정제도

1) 의의

- 현행 법률 제9조 제1항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**적합하지 않은 사건을 유형화**하고,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**법원의 재량으로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**하고 있음

- 즉 배심원에 대한 위협 우려가 있거나, 공범 중 일부만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여 사건을 분리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거나, 성폭력피해자의 2차 피해가 예상되는 등 국민참여재판이 적절하지 않는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도 불구하고 배제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

2) 절차

- 배제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지만, 결정 전에 반드시 검사·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함

- 검사는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하여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배제신청을 할 수 있음

- 검사·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배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가능

- 배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효력이 있음

◈ 형사소송법 ◈
제410조(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)
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.

3) 판단기준

-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배제사유에 대하여는 해석에 큰 어려움이 없으나, **제4호의 배제사유(이른바 '개방형 배제사유')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일정한 판단기준이 필요**함

- **대법원예규 및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실무지침서**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하는 방법으로 개방형 배제사유의 판단기준을 상세하게 규정·설명하고 있음

◈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예규 ◈
제6조(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가 제출된 경우의 조치)
④ 법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배제결정을 할 수 있다.
1. 추가 기소가 예상되는 경우
2. 피고인에게 정신이상의 의심이 있는 경우
3.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경우 현저한 절차지연 등으로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

◈ 법원행정처, 국민참여재판의 이해(2008년), 27-28면 ◈
○ 재판의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
○ 장기간의 심리가 필요하여 배심원의 과중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
○ 피고인이 여러 명이어서 무이유부기피인원의 증가로 배심원 선정기일에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고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고 쟁점이 많은 경우
○ 살인사건 등에서 범행방법이나 결과가 끔찍하여 배심원의 직무에 따른 심리적 부담이 너무 크다고 여겨지는 경우
○ 사건의 내용이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경우
○ 사건이 언론에 널리 보도되어 (당사자의 기피신청권 보장을 위하여) 지나치게 많은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소환하여야 하고 사건에 대해 공정하게 판단할 배심원을 선정하기가 어려운 경우
○ 중요 증인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법원 출석을 확보하기 어렵고 외국에 체류하는 등 언제 증인신문이 이루어질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
○ 관련사건 등의 심리가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
○ 증인이 많아 1주일 이상 연일개정 등 장기간의 심리가 필요한 경우
○ 통상절차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증거조사가 대부분 이루어진 후 비로소 공소장이 변경되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

4) 정치적 사건과 배제결정

- 최근의 일부 사건들을 계기로 정치적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부적절하므로 배제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음
- 그러나 정치적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부적절하다고 간주하여 배제결정을 하는 것은 **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** 있음
- 특히 현행 법률이 ① 배제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허용하면서도 배제하지 않는 결정(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)에 대하여는 불복을 허용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**제4호의 개방형 배제사유는 제한적으로 해석**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임
- 이러한 취지에서, 위 대법원예규 및 실무지침서도 **개방형 배제사유의 구체적인 예시를 국민참여재판에 적합하지 않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 제한적으로 열거**하고 있고, **법원의 배제결정에 관한 실무운영도 소극적**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⇒ 후술 '개방형 배제사유의 세부내역' 참조

5) 개방형 배제사유의 구체화 논의

- 개방형 배제사유의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**개방형 배제사유를 삭제하고 배제사유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자는 견해**가 있음
- 사전에 국민참여재판에 부적합한 모든 경우를 상정하여 **법률 등에 구체적인 배제사유로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**함.
- 국민사법참여위원회의 최종형태 결정 과정에서도 **개방형 배제사유를 대법원규칙에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법으로 한정하자는 안건(의안번호 제2013-7호)이 검찰측으로부터 제출**되어 논의된바 있으나, 위와 같은 이유로 **최종 의결단계에서 부결**됨

3. 배제결정 통계

가. 국민참여재판 전체 현황

[2008.1.1. - 2013.9.30.]

		접 수	처 리				미 제
			소계	판결	배제	철회	
2008	건수	233	215	64	**61**	90	18
	비율	100.0%	92.3%	27.5%	**26.2%**	38.6%	7.7%
2009	건수	336	308	95	**75**	138	46
	비율	-	91.7%	28.3%	**22.3%**	41.1%	-
2010	건수	437	413	162	**75**	176	70
	비율	-	94.5%	37.1%	**17.2%**	40.3%	-
2011	건수	489	494	253	**63**	178	65
	비율	-	101.0%	51.7%	**12.9%**	36.4%	-
2012	건수	752	672	274	**124**	274	145
	비율	-	89.4%	36.4%	**16.5%**	36.4%	-
2013.9.30.	건수	561	591	243	**88**	260	101
	비율	-	105.3%	43.3%	**15.7%**	46.3%	-
합계	전체합계	2,808	2,693	1,091	**486**	1,116	101
	전체비율	100.0%	95.9%	38.9%	**17.3%**	39.7%	3.6%

나. 배제사유 현황

[2008.1.1. ~ 2013.9.30.]

적용 법조		배제현황	
		건수	비율
제9조 제1항 제1호	배심원 안전 위협.공정한 직무수행 우려	1	0.2%
제9조 제1항 제2호	공범인 공동피고인 중 일부만 희망	50	10.3%
제9조 제1항 제3호	성폭력범죄피해자 등이 원하지 않음	48	9.9%
제9조 제1항 제4호	국민참여재판 진행이 적절하지 않음	388	79.7%

다. 개방형 배제사유의 상세내역

[2008.1.1. ~ 2013.9.30.]

제9조 제1항 제4호의 구체적 사유		건수
피고인측 사정	피고인 측이 철회의사를 표시한 경우	193
	피고인이 정신 이상 등의 증세를 보이는 경우	16
	추가기소가 예상되는 경우	4
	구속기간의 만료나 장기화가 우려되는 경우	6
	피고인에게 질병이 있는 경우	5
	불구속 피고인의 출석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	1
	피고인의 태도가 불량한 경우	2

	의사확인서 제출기간을 도과한 경우	4
	소 계	231
증인측 사정	증인이 성폭력 피해자인 경우	29
	친족 간 범행인 경우(유족의 명예감정을 배려함)	2
	기타	20
	소 계	51
사건의 특성	전부 혹은 대부분 자백한 사건 기타 심리할 특별한 쟁점이 없는 사건의 경우	31
	신문할 증인이 너무 많거나 쟁점이 복잡하거나 장기간 심리가 예상되는 사건의 경우	26
	경미한 사건의 경우	3
	공소장 변경 등으로 혹은 애초부터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	10
	사건의 성격상 적절하지 않음(지나치게 잔인한 사건의 경우 등)	7
	공소기각 대상 등 (고소취하 포함)	15
	통상회부결정(법률 제11조)	20
	소 계	112